

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(시설물관리원다급) 및 기간제(영양사) 근로자 채용 공고

국립무형유산원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직(시설물관리원다급) 및 기간제(영양사) 근로자를 채용합니다.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.

2024년 3월 21일
국립무형유산원장

1.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

채용예정분야	직종	인원	근무예정지	담당업무
시설물관리원다급 (기계설비 유지보수)	공무직근로자	1명	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(전주시 완산구 소재)	○ 기계·소방(기계)설비분야 점검 및 보수 ○ 시설관련 현장업무 지원
영양사	기간제근로자 (채용일~2024.12.31.)	1명		○ 구내식당 운영 업무 총괄

※ 세부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름

2. 응시자격(판단기준일 : 최종시험예정일)

가. 공통요건

-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-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○ 응시연령 : 만 18세 ~ 60세 미만

※ 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
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
- 단,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

나. 응시자격 요건

구분	채용자격	관련 자격증
공무직근로자 (시설물관리원다급/기계설비분야)	· 관련자격증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	배관, 공조냉동기계, 용접, 가스, 에너지관리, 위험물, 승강기, 기계정비 등
기간제근로자 (영양사)	·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	

다. 우대사항

구분	계	자기소개서	평가점수			가점 (사회형평)
			관련분야 근무경력	우대사항		
				자격증		
		관련분야	컴퓨터관련			
시설물관리원 다급	100점 +가점	70	20 - 4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: 5 -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: 10 -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: 15 - 36개월 이상 : 20	산업기사 5 기사, 기능장, 기술사 10	-	3
영양사	100점 +가점	60	20 - 4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: 5 -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: 10 -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: 15 - 36개월 이상 : 20	조리사 10 위생사 15	컴퓨터활용능력 2급 3 워드프로세서 1급 3 컴퓨터활용능력 1급 5	3
※ 높은 점수 1개만 인정						

※ 우대사항 및 가점은 서류전형 적극심사 시(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초과)에만 적용

※ 해당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

※ 관련 직무 분야 경력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에서의 근무경력으로 경력 증명서에 근무기간, 직급(직위),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

※ 사회형평가점 - 중복 가점하지 않고 둘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3점 가점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
3. 근무기간

구분	응시자격
공무직근로자(시설물관리원)	○ 채용일 부터 3개월 실무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공무직근로자 채용
기간제근로자(영양사)	○ 채용일~2024.12.31.

○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

※ 채용 예정일 : 2024. 4월 말

4. 근로조건 및 보수

구분	공무직근로자(시설물관리원)	기간제근로자(영양사)
근무시간 및 형태	09:00~18:00, 주5일 근무, 휴게 1시간	08:00~17:00, 주5일 근무, 휴게 1시간
후생복지	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	
보수	○기본급 : 1,955,840원(4대보험 등 공제 전) ○식대 : 140,000원 ○기타수당 : 법정수당(연장, 야간, 휴일 근로수당) ※ 명절휴가비(연2회/설, 추석 각 55만원씩)	○기본급 : 2,013,030원(4대보험 등 공제 전) ○식대 : 140,000원 ○기타수당 : 법정수당(연장, 야간, 휴일 근로수당) ※ 명절휴가비(연2회/설, 추석 각 55만원씩)
	※ 문화재청 「2024년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」에 의거	

5. 시험방법 : 서류전형+면접시험

- 서류심사(1차 시험)
 -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. 다만, 응시인원이 채용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**5배수 초과인 때에는 5배수로**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(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도 합격 처리)
- 면접시험(2차 시험)
 -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
 -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예비 합격자 : 1명
 -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대체할 수 있음

6.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· 채용공고 · 응시원서 접수	2024. 3. 21.(목) ~ 4. 2.(화) 2024. 3. 27.(수) ~ 4. 2.(화)	방문접수(09:00~18:00, 점심시간 제외) 또는 등기우편 접수
· 서류전형 합격자발표	2024. 4. 5.(금) 14시 이후	문화재청·국립무형유산원.나라일터 누리집 공고
· 면접시험	2024. 4. 12.(금)	*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
· 최종 합격자 발표	2024. 4. 15.(월) 14시 이후	문화재청·국립무형유산원.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

7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시간 : 09:00~18:00까지 ※점심시간(12:00~13:00)에는 접수하지 않음
-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
 - 우편접수의 경우 겹봉투에 “시설물관리원다급(또는 영양사) 응시원서 재중” 표기
 - *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(빠른등기)에 한하여 유효
 - ※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- 접수처 :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,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시설계 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(우) 55101
 - ※ “응시번호”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, “응시표”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.
 - *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
8. 제출서류

-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, 응시원서, 이력서 각 1부(붙임 1, 2, 3)
- 자기소개서 1부 (붙임 4)
-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(붙임 5)
-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(반환 필요 시/ 붙임 6)
-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.(붙임 7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(붙임 8)
- 결격사유 확인서 1부.(붙임 9)
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, 사본가능)

9. 재공고 사항

-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

10. 기타 사항

가. 채용서류 반환 관련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별지의 “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”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 -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: '24. 4. 10. ~ 4. 30.
- ※ 다만,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
-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
- 채용서류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5년간 보관

나. 채용비리 관련
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(공정채용 확인서)를 제출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기준 제26조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

다. 기타 유의사항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

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됨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,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-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* 지참 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* 기간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(사진포함, 유효기간 내)
-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-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(063-280-1412)에게 문의
-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.
-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-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근무 시작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,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,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.

- 붙임서식
1.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(양식) 1부.
 2. 응시원서(양식) 1부.
 3. 이력서(양식) 1부.
 4. 자기소개서(양식) 1부.

5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양식) 1부.
6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양식) 1부.
7.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(양식) 1부.
8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양식) 1부.
9. 결격사유 확인서(양식) 1부.
10.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(양식) 1부.
11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양식). 1부.

[별첨]

응시자 제출서류 목록

성 명	응시 분야

▣ 작성목록(총괄표)

※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계 1개로 고정하여 제출(스테플러 미사용)

목 록	작성 여부
1.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(필수)	
2. 응시원서(필수) * 서식 1호	
3. 이력서(필수) * 서식 2호	
4. 자기소개서(필수) * 서식 3호	
5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필수) * 서식 4호	
6.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(해당자에 한함)* 서식 5	
7.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(필수) * 서식 6호	
8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필수) * 서식 7호	
9. 결격사유 확인서(필수) * 서식 8호	
10.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(필수) * 서식 9호	
11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필수) * 서식 10호	
12. 영양사 자격증 사본(필수, 단, 영양사 응시자에 한함)	
13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	
14. 가점사항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	

* 내용을 작성·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“○” 표시,

[붙임서식-1]

응시원서

본인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직(시설물관리원다급) 및 기간제(영양사)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.

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4년 월 일 성명 : (서명)

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

※ 접수번호			응시분야		사진부착 불요함
성명	한글		생년월일		
	한자				
주소					
연락처	(집)전화 : ()		휴대폰 :		

※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

응시표					사진부착 불요함
< 공무원직(시설물관리원다급) 및 기간제(영양사) 근로자채용시험 >					
성명	한글		생년월일		
	한자				
※ 응시번호			응시분야		
2024년 월 일					
국립무형유산원장 (인 또는 서명)					

응시원서 작성요령

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(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)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

1. 응시분야 : 공무원근로자(시설물관리원다급) 또는 기간제근로자(영양사) 기재
2. 성 명 : 한자(漢字)는 정자로 기재
3. 생년월일 :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
4. 주 소 :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
5. 우대사항 :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(√)
6. 가 점 :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(√)
7. 연 락 처 :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

「※」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이 력 서

가. 공통사항

응시 번호	※ 담당자 기재	응시 분야		성 명	
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	-----	--

나. 우대사항(해당자에 한함)

경 력	근무기관	근무기간		직위	담당업무
		'00.00.00. ~' 00.00.00. (00월00일)			
자 격 증	종 류	번 호	취득일 (연월일)	취득기관	
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/인)

※ 경력 란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며 주당근무시간은 비상근의 경우만 작성 하며,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(워드프로세서로 작성)

※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첨부서류는 우대사항 심사 시 배제될 수 있음.

자 기 소 개 서

◎ 자기소개서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작성요령

- 분량은 최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,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
- 글씨크기 12, 줄간격 150mm,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5mm, 머리말,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

[붙임서식-5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[붙임서식-6]

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] <신설 2018. 3. 21.>

(앞쪽)

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
대상자	성 명(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)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국적)
	연락처(휴대전화 등)

본인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취업자등으로서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국립무형유산원의 취업(예정)자 또는 노무 제공(예정)자로서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

(서명 또는 인)

전북전주완산경찰서장 귀하

유의사항

- 개인정보 수집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)
-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: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,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
-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표 등·초본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) 번호 : 123456-1234567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○○○ 년 ○○ 월 ○○ 일

대상자 본인

성 명 : ○○○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 ○○○○.○○.○○.

전화번호 : 010-○○○○-○○○○

결격사유 확인서

성 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4. . .

성명 :

(서명)

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

[붙임서식-9]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		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에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에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에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-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-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<p>1. <u>공직자로 재직</u>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2. '<u>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</u>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된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(5년 내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 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

지 원 자

(서명)

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